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과태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0일

경기도지사

상호 (대표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 (과태료)	처분사유	처분근거
(주)용현종합건설 (정현웅)	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20, 105호(탑스프라자2)	건축공사업 (04-1319)	과태료 부과 2,000,000원	[건설공사대장 미통보] 부곡동 534-1번지 공동주택 (다세대주택) 신축공사 외 4	건설산업 기본법 제99조 제3호